

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제 안 설 명

의 안 번 호	3021
------------	------

문성호 의원 (국민의힘, 서대문2)

- ☐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과 신동원·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문 성 호 의원입니다.
- ☐ 대한민국 「헌법」은 ‘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,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.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.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. 누구든지 성별·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·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’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- ☐ 나아가 「장애인복지법」과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인 특성과 필요를 따져 지원해야 하며, 장애의 유형, 정도, 특성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받아 생활 영역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

- 시각장애인의 경우 주요 정보 인지 감각인 시야의 확보가 어려워 일상생활부터 체육활동 및 관람, 토론회 참석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앞서 언급한 각종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의 유형, 특성에 따른 맞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서울시의 대표 행사인 ‘서울국제정원박람회’ 등 특정 분야의 산업 육성과 문화 양성을 위해 직접적인 체험이 가능한 ‘박람회’ 등의 경험 기회도 결코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.
- 이에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경험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의 눈높이에서 눈앞에 펼쳐진 상황, 구도, 느낌, 공간 표현 등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‘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’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헌법과 상위법령 및 인간의 기본권을 서울시 차원에서 보장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